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9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지아의원)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의 최소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점을 예고 이후로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마약류 관련 정보 입수 시 신속하게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빠르게 변이하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보다 신속하게 신종 마약류를 규제 범위에 포섭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안 제5조의2제3항은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최소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있는데, 예고 제도는 단순히 즉각적인 단

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뿐 아니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위반은 무기징역 등 최고 수준의 형벌 부과 대상인바,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계도기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신속한 지정 필요성과 적정한 인지 기간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5조의2제3항은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기관과의 협의 목적이 임시마약류의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만으로도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 규제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점, 예고된 임시마약류는 거의 예외 없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예고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셋째, 안 제5조의2제3항 후단은 임시마약류 지정 시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현행법에 따른 1군·2군 임시마약류의 정의를 고려할 때 별도로 후단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할 실익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현행법에 따르면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 여부나 마약류와의 유사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외의 물질 등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 넷째, 안 제5조의2제4항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여 임시마약류로 한 번 지정될 경우 계속적으로 임시마약류로 규제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본질이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우선 규제 범위에 포섭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임시적·단계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3년의 지정 기간은 마약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지정은 해당 물질의 위해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장치임.
- 따라서, 지정 기간을 폐지할 경우 임시마약류를 일정 기간 내에 마약

류로 확정·전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잠정적·한시적 규제인 임시마약류 제도의 법적 취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지정기간 및 재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등을 임시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게 되므로,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섯째, 안 제5조의2제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1)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각 호 중 지정 사유(제1호), 명칭(제2호), 군 구분(제3호) 변경 시에는 1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제5조의2제3항 각호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단계와 지정 공고 단계에 각각 포함되는 것이나, 안 제5조의2제7항은 해당 변경이 예고된 내용의 변경과 지정 공고된 내용의 변경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의 구조와 조문 간 조응성을 고려할 때, 예고 사항이 아닌 임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이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안 제5조의2제3항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의 최소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고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긴 1개월 이전부터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
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지정 사유(제1호), 명칭(제2호), 군 구분(제3호) 변
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사유의 경
우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등 변경 시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최초 지정 공고 시에는 인
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보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